

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통지서

접 수 번 호: 제 호

성명(법인명):

주 소:

「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붙임 결정서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첨부: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결정서 정본 1부

년 월 일

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 청인